

재미있는 공증 이야기

김 지 훈

법무법인 이현 공증실 팀장

프랑스 중세시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인테리어에, 달콤하고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진열되어 있는 어느 한 카페에 두 명의 남성이 탁자에 마주앉아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 쪽은 각진 도시락형 얼굴을 가졌고 호랑이와 같이 번쩍이는 눈, 구레나룻부터 시작해 인중까지 온통 얼굴을 덮은 수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얼굴이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동네 아저씨와 같은 순박하고 평범하게 생겼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맞은편 남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철민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회사로 찾아와 돈을 빌려 달라는 친구의 아우성에 두 손을 머리에 감싸며 고민하고 있었다.

동팔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해왔고 군대도 동반 입대했을 정도로 절친한 친구이다.

험악하게 생긴 사내가 눈을 부릅뜨고 인상을 쓰며 말했다.

“야, 강철민. 진짜 너무하네. 우리 20년 된 친구 맞아?”

“.....”

“차용증 써 줄게, 나중에 내가 안 갚으면 압류하면 되잖아. 투자라고 생각해. 연 25% 이율로 계산해서 이자도 매월 줄게.”

나는 동팔이의 말에 곰곰이 생각을 했다.

‘3%도 채 안 되는 은행이자보다 연 25%면……, 차용증도 써준다고 했으니, 나중에 안 갚으면 압류하면 되잖아?’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지?”

“어.....”

“그럼 오늘은 조금 바쁘니까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여기서 보자.”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월요일이 되었다.

철민이는 가벼워 보이는 발걸음으로 조금 전 동팔이를 만났던 카페를 나오고 있었다. 걷는 도중 문득 어제 광민이와 통화했던 내용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어둠만이 감도는 5평 남짓한 방안.
모든 사물이 가려져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 ♪ 빠리리리링 링링~ 빠리리리링 링링~♪ ♪

휴대폰 알람 소리에 철민이는 눈을 손으로 거칠게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휴대폰 시계를 보니 오후 11시 35분이다.
단잠을 깨운 벨소리의 주인공을 응징하고자 소리를 버럭 질렀다.

“누구야!”
“나 광민이야. 밤늦게 전화해서 미안.”

광민이 역시 동팔이와 함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해온 절친한 친구이다.
하지만, 2년 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부터는 소식이 드문드문 했다.
철민이는 다소 누그러진 표정으로 말했다.

“야 오랜만이다. 잘 사냐?”
“오랜만에 전화해서 미안해. 공부하느라 연애하느라 무지 바빴어.”
“광민아 언제 함 술 한잔 해야지~ 아! 맞다, 나 뭐 물어볼게 있는데.”

철민은 현재 표정을 보면 온 세상의 고민을 혼자 짊어진 사람 같았다.
조심스럽게 묻는 철민과 다르게 광민이는 반색하며 말했다.

“뭔데.. 혹시 법적인 질문이냐? 흐흐흐, 그럼 이 형님한테 당연히 물어 봐야지.”
“내가 내일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차용증을 써주기로 했어.
나중에 그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 집에 찾아가
빨간 종이 붙이고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지?”

“.....”

“내 말 듣고 있는 거냐?”

광민이는 전화로 한숨을 내쉬며 질책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숨 소리가 어찌 그리 크던지, 마치 하마가 하품하는 소리 같았다.

“잘 들어.. 철민아! 차용증만 가지고는 빨간 종이를 붙일 수 없어. 네가 말한 것을 유체동산 압류라고 하는데... 압류를 하려면 일단 법적인 채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해. 이 법률적 근거는 집행권원이라 하고, 보통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문을 받아야 돼.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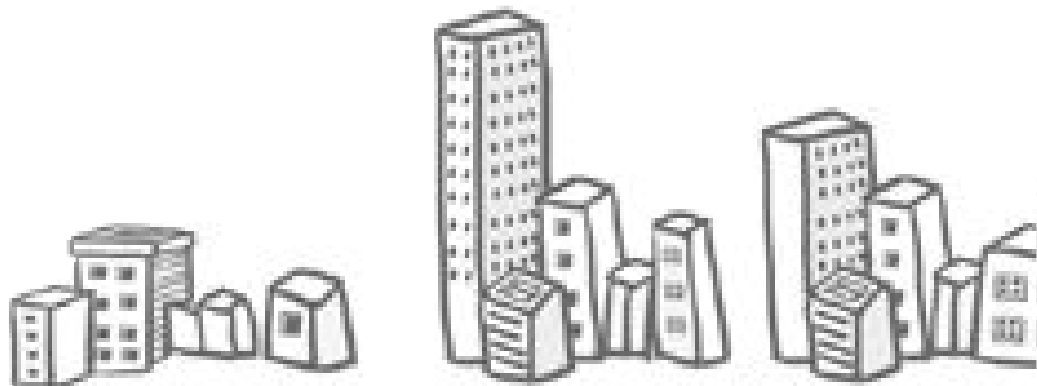
철민이는 광민이의 말을 끊고 물었다.

걱정이 많고 답아둔 것이 많았는지 질문은 마치 빛의 속도와 같았고, 연신 따발총처럼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면 차용증을 써도 나중에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소송해야 된다는 거네. 그러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 변호사 사무실은 어디로 가는 거냐? 기간은 오래 걸리냐?”

광민이는 대답했다.

그 말투는, 마치 ‘나를 형님으로 모셔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철민이 너한테 권유하고 싶지 않아. 후일 소송을 통해 승소 후 판결문을 받는다 해도 그에 따른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너에게 추천할 만한 것은 아냐.”

철민이는 또다시 광민이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럼 소송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냐?”

“그래. 약속어음 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이라고 있어. 그런 것은 공증 사무실을 찾아가 받으면 되고, 아.. 공증이란 쉽게 말해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을 법적으로 증명해 주는거야. 내가 말한 두 공증을 받게 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 승소를 하고 받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철민이 넌 공증받은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를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런 제도도 있었냐?”

눈이 동그해진 철민이를 바라보며..

광민이는 더욱 거드름을 피웠다.



“나를 형님으로 모셔라~”

“알았다. 나머지 얘기는 조만간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술 한 잔 살게.”

어제 있었던 전화 내용을 떠올리며 걷던 철민은 어느덧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어느 호프집 앞에서 멈췄다.

멀리서 볼 때는 허름한 건물이어서 들어가기 뭐 했지만 문 앞에 서니 누가 뒤에서 들어가라고 밀치는 듯 했다.

호프집 앞에 멈춰선 철민은 휴대폰을 꺼내고 버튼을 눌렀다.

“광민아 어디냐?” 

